

[사 건 명] 행심 2018 - 8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0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을 취소  
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  
은 2018. 12.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  
과에 따라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학교에  
서의 봉사 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7.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8. 12.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이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너 싸가지 없다” 라는 말을 친구로부터 전하여 듣고, 2018.11.09. 3교시 후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청구인을 일방적인 폭행하고, 점심시간에도 복도 및 화장실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임에도, 동급생들은 이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알면서도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분하였다.
- 나. ○○○ 및 그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청구인이 가는 길을 방해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한 것이며, 화장실에서 ○○○과 대화로 풀려고 하였고, “싸우고 싶으면 먼저 나를 때려라” 라고 두 번 정도 말하자 ○○○이 “때리지 않겠다” 해서, 청구인은 그만하자는 의도로 ○○○의 얼굴부위를 가볍게 터치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이 청구인의 가슴부위를 밀어 청구인은 드라이타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 다. 페이스북 상 ○○○이 배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나, CCTV 영상을 보면 ○○○이 화장실에서 나와 보건실에 갈 때, 다시 화장실로 돌아올 때 모습 상 그와 같은 이상 징후는 없고 정상적으로 보인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나,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며, 중요한 여러 증거(CCTV)나 정황,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하지도 않은 채 ○○○과 그 친구들의 진술서만 가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사안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로 학폭위를 개최했고, 학폭위 폭력사안개요도 상대방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하며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적고 진한 글씨로 표현하여 청구인을 가해자로 지목되도록 하고,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여부만 묻고서 이 사건 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피해 및 가정의 평안을 위협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사안 신고접수를 받은 후,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명백하게 서로 치고 받은 몸싸움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 청구인에게 얼굴과 배를 맞아 ○○○의 윗입술이 찢어졌고 복부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나.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화장실에 청구인과 ○○○ 외에는 목격자나 증인이 전혀 없어, 관련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와 학폭위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회의하였고, 그 결과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피해 상황과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 조치하였다.

다. 청구인과 ○○○의 진술이 너무도 상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사안개요에 양쪽의 주장뿐 아니라 관련 학생들의 진술도 모두 기재하였으며, 관련 학생들의 진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화장실에 같이 있지 않았다.

라. CCTV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므로 열람에 제한이 크고, 학폭위에 CCTV를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번 사안이 접수된 후 학교폭력 책임교사도 화장실 안쪽(내부)이 보이는지, 학교폭력 장면이 화면에 찍혔는지의 여부만 확인한 것일 뿐,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CCTV의 존재와 그 내용을 학폭위에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진술을 종합해서 객관적 견지에서 논의한 결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 답변서, 관련학생들의 각 사실확인서, CCTV영상자료, 학폭위에서의 청구인 및 관련학생들의 각 진술, 청구인의 보호자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과 ○○○은 서로 어울리던 사이였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2018. 11. 9. 3교시 후 쉬는 시간에 3-7반 앞 복도에서 청구인과 ○○○이 대립하여, 주변 친구들이 청구인과 ○○○을 제지하였다.
- 점심식사 후 청구인이 지00과 교무실로 가던 중 5층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다시 ○○○과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자, 청구인은 다시 ○○○과 대립하게 됐고, ○○○이 어깨로 밀자, 청구인도 손으로 ○○○을 밀치고 옷을 벗으며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라’ 고 하여, 청구인과 ○○○ 둘만 화장실로 들어가게 됐고, 친구들은 잠시 화장실 앞에 머물다가 지도 선생님에게 열쇠를 받으려고 그곳을 떠나게 됐다.
- 화장실 안에서 청구인은 화장실 문 쪽에, ○○○은 그 안쪽에 선 채로, 청구인이 ○○○에게 ‘싸울 거면 먼저 쳐봐, 쳐봐’ 라고 2차례 정도 말하자 ○○○이 ‘때리지 않겠다’ 고 몇 차례 말했는데, 청구인이 ○○○의 왼 뺨을 2차례 때렸다.
- 청구인은 ‘관두자’ 는 취지로 ○○○의 왼뺨을 살짝 두 번 치고 나가려는데, ○○○이 뭐라고 말하며 자신을 세게 밀쳐서, 자신은 드라이타올에 목 뒷부분을 부딪친 후 정신을 잃었고, 중간에 허리를 숙이고 양팔로 얼굴을 가드한 채로 ○○○로부터 폭행당한 것만 기억난다고 주장하나,

○○○은 청구인으로부터 왼 뺨을 2차례 맞고 ‘뺨 때렸냐’고 따지자, 청구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됐다고 하고,

친구들이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청구인과 ○○○ 간 싸움은 끝난 상태였는데, 청구인은 앞니가 부러지고, ○○○은 오른손 손등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입술이 터진 상태였는데 손등 뼈가 보일 정도여서 우선 ●●●가 ○○○을 보건실로 데려갔고, ■■■과 □□□는 청구인과 화장실에 남아서 부러진 청구인의 이빨을 찾고 피를 닦았는데 화장실 가장 안쪽인 좌변기 2번째 칸에서 청구인의 부러진 이빨을 찾았다고 하며,

○○○이 보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화장실로 돌아가서 청구인과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에게 사건경위를 말했는데, 선생님은 청구인도 처음엔 상호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의 윗입술 안이 찢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손등은 뼈가 보일 정도로 상해가 중하여 급히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고, 그 당시 청구인이 페이스북으로 ○○○에게 ‘괜찮냐’고 먼저 묻고, ○○○이 ‘장 파열이 된 것 같다,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며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청구인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화장실 안에서 ○○○과 다투며 ○○○의 얼굴과 배를 때려 ○○○의 윗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복부에도 통증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의 오른손 중지 부분 인대 두 대가 파열된 것은 ○○○이 청구인을 폭행하며 다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외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가.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8. 11. 9. 점심시간에 5층 화장실 앞이나 안에서 ○○○을 밀치거나 때린 행위는 폭행, 상해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

2018. 11. 29.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나 청구인과 ○○○의 각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관하여 심각성은 낮음 1점, 지속성은 없음 0점, 고의성도 낮음 1점으로 판단했고, 반성정도는 청구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이므로 보통 2점, 화해정도도 청구인이 화해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상태이므로 보통 2점으로 판단하여 총 6점으로 산정하였고, 특별한 경감사유도 없었으므로, 위 산정점수에 따라 학폭법 제17조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및 그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 따라서 2018. 12. 3.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